

목 차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요약>	2
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3
1. 권유자에 관한 사항	3
2. 권유자의 대리인에 관한 사항	3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임인)	3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3
3. 권유기간 및 피권유자의 범위	3
가. 권유기간	3
나. 피권유자의 범위	4
I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5
1.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취지	5
2. 의결권의 위임에 관한 사항	5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5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5
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6
3.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직접 행사에 관한 사항	6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6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6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6
III.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7
□ 정관의 변경	7
□ 기타 주주총회의 목적사항	9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6년 8월 3일

권 유 자:	성 명: (주)하나투어 주 소: 서울 종로구 인사동5길 41 전화번호: 02-2127-1235
작 성 자:	성 명: 우정길 부서 및 직위: IR팀 사원 전화번호: 02-2127-1235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요약>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가. 권유자	(주)하나투어	나. 회사와의 관계	본인
다. 주총 소집공고일	2026년 08월 03일	라. 주주총회일	2026년 08월 18일
마. 권유 시작일	2026년 08월 08일	바. 권유업무 위탁 여부	미위탁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가. 권유취지	원활한 주주총회 진행을 위해 필요한 의결 정족수 확보		
나. 전자위임장 여부	전자위임장 가능	(관리기관)	삼성증권
(인터넷 주소)	https://vote.samsungpop.com		
다. 전자/서면투표 여부	전자투표 가능	(전자투표 관리기관)	삼성증권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	https://vote.samsungpop.com		
3. 주주총회 목적사항			
☐ 정관의변경			
☐ 기타주주총회의목적사항			

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1. 권유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소유비율	회사와의 관계	비고
(주)하나투어	보통주	824,753	5.32	본인	-

(*) 주주명부 등재 기준

- 권유자의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권유자와의 관계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소유 비율	회사와의 관계	비고
하모니아1호 유한회사	최대주주	보통주	2,675,986	16.68	최대주주	-
박상환	특수관계인	보통주	1,047,032	6.53	특수관계인	-
권희석	특수관계인	보통주	717,972	4.48	특수관계인	-
류창호	특수관계인	보통주	5,000	0.03	특수관계인	-
이재명	특수관계인	보통주	2,291	0.01	특수관계인	-
송미선	특수관계인	보통주	2,000	0.01	특수관계인	-
김창훈	특수관계인	보통주	1,700	0.01	특수관계인	-
계	-	-	4,451,981	28.74	-	-

2. 권유자의 대리인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임인)

성명 (회사명)	주식의 종류	소유 주식수	회사와의 관계	권유자와의 관계	비고
우정길	보통주	0	직원	직원	-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성명 (회사명)	구분	주식의 종류	주식 소유수	회사와의 관계	권유자와의 관계	비고
-	해당사항없음	-	-	-	-	-

3. 권유기간 및 피권유자의 범위

가. 권유기간

주주총회 소집공고일	권유 시작일	권유 종료일	주주총회일
---------------	--------	--------	-------

2026년 08월 03일	2026년 08월 08일	2026년 08월 17일	2026년 08월 18일
---------------	---------------	---------------	---------------

나. 피권유자의 범위

2026년 7월 23일 기준일 현재 의결권 있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 전체
--

I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1.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취지

원활한 주주총회 진행을 위해 필요한 의결 정족수 확보

2. 의결권의 위임에 관한 사항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여부	전자위임장 가능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2026년 8월 8일 9시 ~ 2026년 8월 17일 17시
전자위임장 관리기관	삼성증권
전자위임장 수여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https://vote.samsungpop.com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고시에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에 관한 사항'을 안내 하였음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 권유자 등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는 방법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	X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	X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	O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O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 (발행인에 한함)	X

- 위임장용지 교부 인터넷 홈페이지

홈페이지 명칭	인터넷 주소	비고
삼성증권 전자위임장시스템	https://vote.samsungpop.com	-

- 전자우편 전송에 대한 피권유자의 의사표시 확보 여부 및 확보 계획

이메일 또는 전화 등 적절한 방법으로 전자우편을 통하여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를 받는다는 의결권 피권유자의 의사표시를 확보할 예정임.

□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 위임장 접수처
 -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5길 41 (주)하나투어 IR팀 (우편번호 03161)
 - 전화번호 : 02-2127-1235
- 우편 접수 여부 : 가능
- 접수 기간 : 2026년 8월 8일 ~ 8월 18일 제34기 임시주주총회 개시 전

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

3.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직접 행사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일 시	2026년 8월 18일 오전 9시
장 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 5길 41 (주)하나투어 지하1층 대강의장(Terminal 1)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전자투표 가능 여부	전자투표 가능
전자투표 기간	2026년 8월 8일 9시 ~ 2026년 8월 17일 17시
전자투표 관리기관	삼성증권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https://vote.samsungpop.com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고시에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에 관한 사항'을 안내 하였음

□ 서면투표에 관한 사항

서면투표 가능 여부	해당사항 없음
서면투표 기간	-
서면투표 방법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

III.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정관의 변경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	-	-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제19조(소집권자) ① 주주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u>대표이사</u> 가 소집한다. ② <u>대표이사</u> 가 유고시에는 제34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소집권자) ① 주주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u>대표집행임원</u> 이 소집한다. ② <u>대표집행임원</u> 유고시에는 제34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집행임원제도 도입으로 인한 변경
제22조(의장)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u>대표이사</u> 로 한다. ② <u>대표이사</u> 가 유고시에는 제34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2조(의장)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u>대표집행임원</u> 이 한다. 단, <u>대표집행임원</u> 이 복수인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② <u>대표집행임원</u> 유고시에는 제34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집행임원제도 도입으로 인한 변경
제 5 장 이 사·이 사 회·대 표 이 사	제 5 장 이 사·이 사 회·집 행 임 원	-집행임원제도 도입으로 인한 변경
제33조(대표이사 등의 선임) 이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수인의 대표이사를 둘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 회장, 부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및 이사 약간명을 선임할 수 있다.	제33조(집행임원 등의 선임) ① 이 회사는 <u>대표집행임원</u> 과 <u>집행임원</u> 을 둔다. <u>대표집행임원</u> 의 수, 직책 등은 이사회 결의로 정하고 <u>집행임원</u> 이 1인인 경우 해당 <u>집행임원</u> 을 정관상 <u>대표집행임원</u> 으로 본다. 회사는 필요한 경우에 회장, 부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약간명을 선임할 수 있다. ② <u>대표집행임원</u> 과 <u>집행임원</u> 은 이사회 결의로 선임한다. ③ <u>대표집행임원</u> 과 <u>집행임원</u> 의 수, 직책, 보수, 퇴직금 등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④ <u>대표집행임원</u> 과 <u>집행임원</u> 의 임기는 1년 이상으로 하고, 해당 <u>대표집행임원</u> 또는 <u>집행임원</u> 의 선임 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집행임원제도 도입으로 인한 변경

제34조(이사의 직무) ①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및 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회사의 업무를 분장 집행하며,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이사회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4조(대표집행임원, 집행임원의 직무) ① 대표집행임원은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집행임원,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및 기타 임원은 대표집행임원을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회사의 업무를 분장 집행하며, 대표집행임원 유고시에는 이사회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대표집행임원과 집행임원은 3개월에 1회 이상 업무의 집행 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단, 이사회가 요청하는 경우 수시로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대표집행임원과 집행임원은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 소집권자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집행임원제도 도입으로 인한 변경
제34조의 2(이사의 의무) ①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이사는 재임중 뿐 만 아니라 퇴임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위원회나 감사위원회위원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34조의 2(이사·집행임원의 의무) ① 이사 및 집행임원은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이사 및 집행임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이사 및 집행임원은 재임중 뿐 만 아니라 퇴임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이사 및 집행임원은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위원회나 감사위원회위원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집행임원제도 도입으로 인한 변경
제36조(이사회 구성과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이 회사 업무의 중요사항을 결의한다.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 [7일] 전에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권자로서 지정되지 않은 다른 이사는 소집권자인 이사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소집권자인 이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사회 소집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다른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이사회 의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 소집권자로 한다. ⑤ 이사는 3개월에 1회 이상 업무의 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6조(이사회 구성과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이 회사 업무의 중요사항을 결의한다. ② 이사회는 각 이사가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 [7일] 전에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권자로서 지정되지 않은 다른 이사는 소집권자인 이사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소집권자인 이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사회 소집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다른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이사회 의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 소집권자로 한다. ⑤ 이사는 3개월에 1회 이상 업무의 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집행임원제도 도입으로 인한 변경

제46조(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비치 등) ① 대표이사는 상법 제447조 및 제447조의2의 서류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 전에 제1항의 서류를 감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감사위원회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 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대표이사는 제1항 각호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를 영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와 함께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 전부터 본사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⑤ 대표이사는 상법 제447조의 서류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제447조의2의 서류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⑥ 대표이사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46조(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비치 등) ① 대표집행임원은 상법 제447조 및 제447조의2의 서류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대표집행임원은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 전에 제1항의 서류를 감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감사위원회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 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집행임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대표집행임원은 제1항 각호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를 영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와 함께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 전부터 본사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⑤ 대표집행임원은 상법 제447조의 서류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제447조의2의 서류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⑥ 대표집행임원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	-집행임원제도 도입으로 인한 변경
부칙 <신 설>	부칙 이 정관은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2026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정관 시행일자 명시

※ 기타 참고사항

□ 기타 주주총회의 목적사항

가. 의안 제목

임원퇴직금지급규정 일부 변경

나. 의안의 요지

퇴직금 지급기준의 형평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다. 세부 변경 내역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제 2 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법인 등기 임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 2 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법인 등기 임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집행임원의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정하며,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집행임원의 경우, 이사회에서 정하는 사항이 없으면, 이 규정을 적용하도록 함
부칙 <신 설>	부칙 제2조(개정일) 본 규정은 주주총회 의결 후 2026년 8월 18일부터 개정·시행한다.	-개정규정 시행일자 명시

[부표1] 임원퇴직금 지급률				[부표1] 임원퇴직금 지급률		-임원퇴직금 지급률 변경	
구분		대표이사	총괄 본부장	본부장	직급		퇴직금 지급률
		회장	5				1.5
		부회장	4.5				
사장	4	3.5	3				
부사장	3.5	3.5	3				
					회장		
					부회장		
					사장		
					부사장		
					E4(전무)		
					E3(상무A)		
					E2(상무B)		
					E1(상무보)		
					(상임)고문/감사	1	

※ 기타 참고사항

—